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5. 26.>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9조제1항 관련)

1. 교육시기 및 유효기간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가. 교육시기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직전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나. 유효기간	해당 교육 이수일 부터 3년	직전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 부터 3년

비고: 위 표에서 “직전에 이수한 교육”이란 정기교육을 받으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과거에 이수한 신규교육이나 정기교육을 말한다.

2. 교육내용

구분	외항선의 사업장 소속	내항선의 사업장 소속
교육내용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영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4. 해운·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상·해상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5. 해양사고 및 중대재해 관리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영 관련 국내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4. 해운·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상·해상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5. 해양사고 및 중대재해 관리

비고: 위 표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내항선의 사업장 소속 교육 대상자는 외항선의 사업장 소속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3. 교육시간

구분		외항선의 사업장 소속	내항선의 사업장 소속
교육시간	안전관리 책임자	16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안전 관리자	14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비고: 위 표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교육 대상자는 자신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4. 교육 시간의 면제

- 가.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새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종전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제2호의 교육 내용과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교육을 받은 시간만큼 교육 시간을 줄일 수 있다.